

본 문서는 투자자가 (주)루프펀딩(이하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및 **투자자이용약관**을 동의·수락하고 참여하는 **투자행위**에 관련된 위험사항 고지를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투자행위**의 정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rooffunding.com)를 통한 채권참가 행위를 의미하며, 동 채권참가 행위는 회사의 제휴여신업체인 (주)루프펀딩대부(이하 “여신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 권리에 대한 투자 행위입니다. **[관련약관 : 투자자이용약관 제3조]**)

본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투자행위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음의 기재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투자행위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행위를 통하여 투자된 원금과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투자행위를 통하여 투자된 원금과 수익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다음 사항에서 설명되는 원금 및 수익률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적으로 자기책임 원칙 하에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며, 귀하의 투자행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 및 여신업체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 음 —

가. 일반위험

원금과 수익률의 손실 위험 [관련약관 : 투자자이용약관 제7조]

본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투자행위는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및 수익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 원금과 수익률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진행됩니다.
- 회사 및 여신업체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원금과 수익률의 손실 내지 감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과 수익률의 손실 위험

본 원리금수취권리의 대상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자의 재무 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거시 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의 이유로 대출 고객의 상황이 지연되거나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원금과 수익률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출이용조건 및 부도율 평가방법이 기존 금융권 대출과의 차이에 따른 위험

대출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과 같은 대출이용 조건은 회사와 대출자간 거래에 의하여 결정되며 예상부도율을 회사의 평가모형에 의하여 책정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부도율이 높을 경우 원금과 수익률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투자행위의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자산의 예: 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25%, 지방세2.5%를 포함한 27.5%)
- 비과세대상 자산의 예: 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금손실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원금손실 등)

시장위험

거시경제가 악화 되는 경우(예: 외환위기, 리먼사태, 국가신용등급하락, 경기침체, 등)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 변동 등의 요인들은 대출자의 경제 생활 전반에 걸친 영향을 끼치며 상환 능력의 변동에 따른 부실율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의 악화는 담보권의 바탕이 되는 자산(예: 부동산 등)의 가치 하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약관: 투자자이용약관 제2조 4항 및 6항]

투자자는 대출자의 부도 발생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직접 채권추심행위를 진행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직접 추심할 수 없으며, 약관에 의거 직접 채권 추심행위를 진행할 수 없으며, P2P플랫폼 사업회사의 내부절차(신용정보회사위임 등 로만) 채권추심절차가 제한됩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행위를 통하여 투자된 금원에 대하여는 대출자의 대출상환 전 중도인출이 제한됨에 따라 유동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나. 특수위험

P2P 플랫폼 사업자(회사)의 사업운용위험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지속적 손실 발생, 사업성 저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P2P 플랫폼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더 이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P2P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 사업에 대한 법적판단 위험

회사에 대한 제3자로부터 압류(가압류 포함), 추심행위 등이 발생하더라도 투자행위로 인한

투자금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압류(가압류 포함)가 배제되도록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P2P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가 아직 판례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신규성이 높은 업무임을 고려 시, 향후 법적 분쟁에 따라 당해 판결이 완료될 때 까지는 자금의 인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법적 판결이 달리 판단되어 압류(가압류 포함)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투자 가상계좌 예치금의 기회비용 손실 위험

향후 투자행위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가상계좌에 충전된 예치금(이하 “투자 가상계좌 예치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기회비용 손실위험이 존재합니다.

- 투자행위를 위하여 투자 가상계좌에 최초 입금한 예치금
- 투자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펀딩 금액의 100%에 대한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모집 중에 있는 예치금
- 펀딩 금액의 100% 모집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대출자에게 해당 대출금이 전달되기 전에 있는 예치금
- 대출자의 상환(조기 상환 포함) 등으로 투자 가상계좌에 상환된 원금으로 재투자를 위해 대기 중이거나 출금 신청되지 않은 예치금

수익성 변동 또는 비보장 위험

회사의 웹사이트 상 제시되어 있는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서 예시에 불과한 참고사항입니다. 대출자가 중도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당초 기대하였던 기간에 대한 만기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 당초에 기대하였던 수익성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정산처리 지연 및 불능에 따른 투자 가상계좌 예치금의 출금제한, 출금지연, 출금불가능성 등의 위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정산처리 지연 또는 불능에 따라 투자 가상계좌 예치금에 대한 출금지연, 출금제한, 출금불가능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처리지연 또는 불능에 따라 사실상 정산처리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자가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경우
- 플랫폼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 처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망 등의 전산처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 정산처리에 필요한 계산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

플랫폼 이용 수수료 지급에 대한 유의사항

매 투자건에 대하여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예상 수익률이 달성(중도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기간 수익률 달성)된 경우 투자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납부의무가 발생 합니다.

[유의사항]

1. 투자 신청 시 동 위험사항 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행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충분히 고려한 후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원금과 수익률의 손실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일반위험뿐만 아니라, 특수위험 및 기타위험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 상품의 부실율을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경우 당초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등록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동 위험사항 안내서에 포함된 내용 외에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